1 2019년도 정기평가 개요

❑ 평가대상 선정기준

○ 2017.12.31.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 선정

- 다만,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중 위의 대상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

○ 급여종류별 대상기관 현황

2019.1.3. 기준 (단위 : 개소)

구분	총계	방문요양	방문목욕	방문간호	주야간보호	단기보호	복지용구
총계	**6,985**	**3,918**	**943**	**129**	**1,370**	**58**	**567**
서울	1,387	773	170	32	272	29	111
부산	920	573	108	8	153	0	78
대구	846	487	85	8	199	11	56
광주	1,119	606	184	19	215	1	94
대전	842	467	104	14	191	0	66
경인	1,871	1,012	292	48	340	17	162

❑ 등급결정

○ 5등급(A~ E) 절대평가 …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

- A(최우수)등급: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
- B(우수)등급: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
- C(양호)등급: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
- D(보통)등급: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
- E(미흡)등급: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

○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

❑ 결과공표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공개

- 모든 기관의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 공개

○ 시·군·구에 평가 결과통보서 송부

- 시·군·구 관할 장기요양기관 명단 및 각 기관 평가점수
- 인력기준, 시설기준 미흡한 주야간·단기보호 기관은 미흡사항 및 세부내용 표기하여 통보
- 평가비대상(평가불가)기관 명단 및 평가거부기관 명단 통보

○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통보서 통보